

발간등록번호

11-1620075-000015-01

# 인권증진을 위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실무협력 매뉴얼

2019. 10.



## I 매뉴얼 안내

1. 본 매뉴얼의 작성 배경 및 목적
2. 법적 근거
3. 매뉴얼의 구성 및 활용방법

## II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개요

1. 장애인학대 ..... 12
  - 1) 신체적 학대
  - 2) 정서적 학대
  - 3) 성적 학대
  - 4) 경제적 착취
  - 5) 방임 및 유기
2. 장애인 대상 성범죄 ..... 15
  - 1) 성폭행(강간, 강제추행 등)
  - 2) 통신매체, 사이버 등의 성폭력
  - 3) 친족 성폭력
  - 4) 또래 성폭력
  - 5) 성희롱

## III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접수

1. 신고접수 기관 ..... 20
  - 1) 법적 근거
  - 2) 추진체계
2. 신고접수 과정에서의 주의점 ..... 24
  - 1) 신고접수 시 주의사항
  - 2) 신고접수 시 확인사항
  - 3) 장애인의 환경적·경험적 특성 고려

## IV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실무협력 체계

1. 수사 단계에서의 실무협력 체계	28
1) 체계도	
2) 수사의 개시 단계	
3) 수사의 진행 단계	
4) 수사의 종료 단계	
2. 기관 조사 과정에서의 실무협력 체계	33
1) 체계도	
2) 현장조사	
3) 조사결과: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로 판단될 때	
4) 조사결과: 학대가 아닌 차별일 때	

## V 학대 등의 피해장애인 면담 가이드

1. 장애이해 및 관련 용어의 바른 사용	38
1) 장애 이해	
2)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유형	
3) 관련 용어의 바른 사용	
2. 신체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 면담 가이드	42
1)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	
2) 내부기관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	
3.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 면담 가이드	48
1) 발달장애를 가진 피해자	
2)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가진 피해자	

## VI 부록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54
2. 국가인권위원회 소개	56
3. 경남지방경찰청의 장애인 인권보호 활동 소개	58
4. 주요기관 연락처	60



인권증진을 위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실무협력 매뉴얼

# I

## 매뉴얼 안내

## I-1 본 매뉴얼의 작성 배경 및 목적

### 1) 매뉴얼의 작성 배경

- 아동학대, 노인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2000년 법적근거 마련)과 노인보호전문기관(2004년 법적근거 마련)의 설치를 통해 피해아동과 피해노인을 지원하고 학대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장애인학대 사건을 대응할 별도의 법적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2015년 6월 22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접수, 조사, 예방업무 등을 수행할 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sup>1)</sup>을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중앙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 중입니다.
- 그러나 아직 지역의 대다수 수사기관 등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현장조사 시에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사건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동행요청을 하여도 어떤 근거로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해야 하는지 반문하는 경우도 많으며, 법적근거를 제시해도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 이에 본 매뉴얼은 법률에 근거한 수사기관과 권익옹호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무협력 체계를 지역 내 사법경찰관리의 입장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1) 장애인학대 등에 관한 법적 기관의 명칭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은 '보호'라는 단어가 명칭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장애계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 이에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유사하지만, 그 명칭은 '권익옹호기관'으로 정해짐.

## 2) 매뉴얼의 작성 목적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과 권익옹호기관을 중심으로 한 실무협력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기 위함.
- 각 기관의 업무를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등의 수사 시에 상호 간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기 위함.
- 장애인학대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상호 소통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

## I-2 법적 근거

### 1) 실무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권익옹호기관이 공조해야 하는 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1〉 수사기관과 권익옹호기관의 협업에 관한 법적 근거

지역 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

⇒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2항

장애인학대 등의 신고접수 기관을 수사기관과 권익옹호기관으로 정한 규정

⇒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항

수사기관과 권익옹호기관이 상호 간에 현장조사의 동행 요청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

⇒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1항

피해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해야 할 때에  
의뢰 기관으로 권익옹호기관을 명시한 규정

⇒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2항

권익옹호기관 직원이 장애인학대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규정

⇒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3~5항

누구든지 장애인학대에 대한 권익옹호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한 규정

⇒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6항

장애인학대 조사와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과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한 규정

⇒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3항

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피해장애인의 보조인 및 신뢰관계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한 규정

⇒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 I-3 매뉴얼의 구성 및 활용방법

### 1) 매뉴얼의 구성

- 본 매뉴얼은 크게 네 개의 파트와 네 개의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사기관과 권익옹호기관의 실무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속한 사법경찰관리의 입장에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권익옹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하기 쉽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장애관련 용어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에 근거한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법률적 해석과 지원이 필요한 기관 종사자로서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밝힙니다.

### 2) 매뉴얼의 활용방법

- 각 파트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어, 미리 숙지한다면 해당 업무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표2〉 매뉴얼의 구성 및 활용방법

<b>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개요</b>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포함되는 대표적 행위를 제시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b>신고접수</b>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학대 등의 신고접수 권한을 가진 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 등을 중심으로 추진체계 및 신고접수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확인사항, 장애인의 특성을 제시하여 신고접수 업무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b>권익옹호기관과의 협업 체계</b>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권익옹호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업무를 제시하였고, 권익옹호기관에서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업무를 제시하여 상호 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b>피해장애인 면담 가이드</b>	장애에 대한 개념 등의 이해를 돕고, 피해장애인을 면담할 때에 사전에 장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여 면담에 임할 수 있도록 구성

- 부록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담아,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표3〉 부록의 구성 및 활용방법**

<b>권익옹호기관 소개</b>	권익옹호기관의 법적 근거와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 주요 업무 등을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인지하여 해당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b>국가인권위원회 소개</b>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주요 기능, 절차 등을 소개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인지하여 해당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b>경남지방경찰청의 장애인 인권보호 활동 소개</b>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수행해 온 장애인 인권보호 활동과 사법경찰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향 및 교육을 소개
<b>주요기관 연락처</b>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이 신고접수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주요기관을 소개

## II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개요

## Ⅱ-1 장애인 학대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근거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체적 학대

- 신체적 학대는 장애인의 몸에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 신체적 학대 대표 행위

- 손이나 발 등 몸이나 도구를 사용해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체벌, 기합
- 가혹행위(잠을 재우지 않기, 굶기기, 상한음식이나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음식 섭취 강요, 고문 등)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약물 투여
- 묶거나 가두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 원치 않은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 하는 행위(낙태, 문신, 불임 등)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2) 정서적 학대

○ 정서적 학대는 장애인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심한 수치심이나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정서적 학대 대표 행위

-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공포감을 주는 위협이나 협박
- 지속적인 비하, 모욕, 조롱, 욕설
-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행위
- 원치 않는 종교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 말을 듣지 않으면 정신병원이나 시설로 보내겠다고 겁을 주는 행위 (원치 않는 입원 · 입소를 강요하는 행위)



## 3) 성적 학대

○ 성적학대는 강제추행, 성폭행(강간) 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성매매 등 성적 착취,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 □ 성적 학대 대표 행위

- 강간, 강제추행
-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
- 원치 않는 사람과의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 성적 행위나 신체를 촬영하거나 게시, 유포하는 행위
- 목욕을 하는데 문을 열어놓은 행위
- 중증장애인일 경우 당사자가 원치 않는 여성이 목욕 지원을 하는 행위



## 4) 경제적 착취

○ 경제적 착취는 장애인의 금전, 가치 있는 물건 등 재산을 힘으로 빼앗거나 장애인을 속여서 스스로 내어 놓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 □ 경제적 착취 대표 행위

-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
-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재산을 빼앗는 행위
-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
-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 폭행, 협박, 기망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현저히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행위
-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 유기 및 방임

○ 유기는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며, 방임은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유기 · 방임 대표 행위

- 장애인을 본래 거주지가 아닌 장소에 버리고 연락을 끊는 행위
-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을 현저히 소홀하게 하는 행위
- 목욕, 세탁, 신변처리 등에 관한 지원을 현저히 소홀하게 하는 행위
- 치료, 수술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함을 알고도 이를 지원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 행위



## II-2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을 의미하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애아동 · 청소년<sup>2)</sup>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비롯해 장애인의 보호 ·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 감독해야 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아래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성범죄 행위입니다.
  -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1) 성폭행(강간, 강제추행 등)

- 성폭행은 장애인에게 겁을 주거나 힘을 이용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억지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행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 □ 성폭행 대표 행위

- 상대가 원치 않으나 억지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
- 구강, 항문 성교 및 유사 성교 행위
- 다른 사람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 상대가 원치 않으나 억지로 몸을 만지는 모든 행위
- 성적인 방식으로 타인을 만지도록 하는 행위
- 강제로 옷을 벗기는 행위
- 약물이나 술을 먹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행위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과자, 화장품 등의 선물로 유인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행위

## 2) 통신매체, 사이버 등의 성폭력

- 통신매체를 활용한 음란행위로서 말, 음향, 글, 그림, 사진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허락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 통신매체, 사이버 등의 성폭력은 현실세계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성적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 □ 통신매체, 사이버 등의 성폭력 대표 행위

- 카메라,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허락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영상 및 음향 전달 및 게시, 판매
-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관련 욕설



## 3) 친족 성폭력

-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 친족 성폭력이 의심된다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빨리 분리시켜야 합니다. 친족 성폭력은 같은 거주지 내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친족 성폭력 대표 행위

- 부모, 삼촌, 형제 등 가까운 가족이 가하는 모든 성폭력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까운 가족이 가하는 성폭력 행위



## 4) 또래 성폭력

- 아동·청소년이 또래 친구들로부터 당하는 성폭력 행위로서, 대개 장난처럼 벌어지기도 합니다. 장난일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행동은 상처를 주는 성범죄가 됩니다.

### □ 또래 성폭력 대표 행위

- 장난처럼 성행동을 흉내 내는 행위
- 상대방의 외모를 비유해서 성적으로 놀리는 행위
- 장난으로 바지를 내리는 행위
- 장난이라며 동의 없이 성적 부위를 만지는 행위
- 동의 없이 성적 부위를 사진 찍어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행위
- (공중)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몰래 훑쳐보는 행위
- 게임이나 벌칙이라며 스킨십을 강요하는 행위



## 5) 성희롱

-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조항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성희롱 대표 행위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으로서,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보여 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여 보게 하는 행위



III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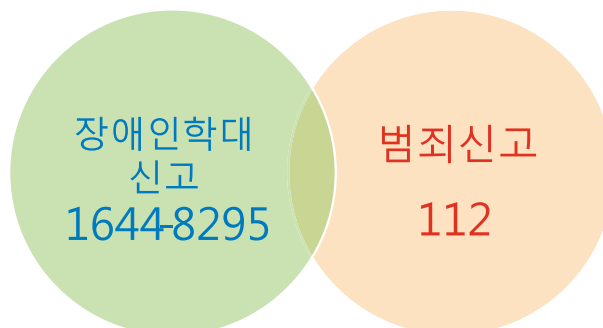
## Ⅲ-1 신고접수 기관

### 1) 신고접수의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동법 제59조의4 제2항에는 신고의무자 규정을 두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의무적으로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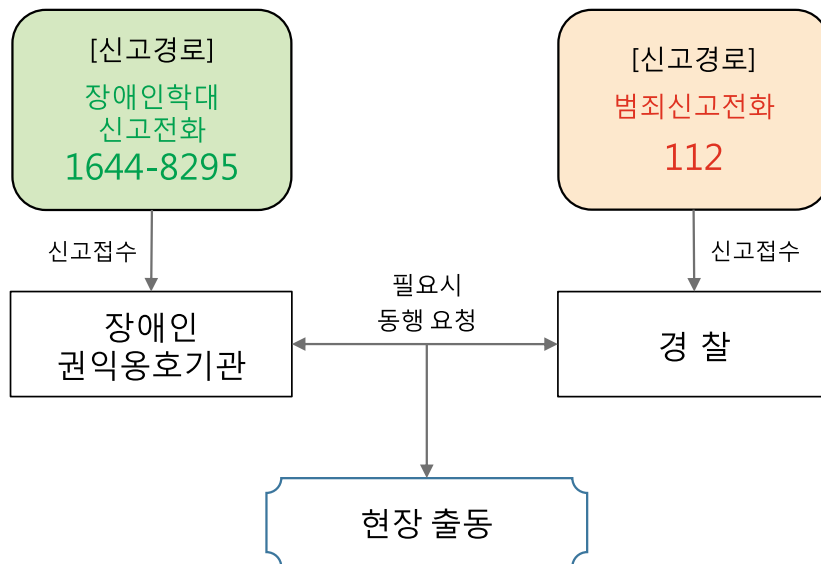
#### ※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급대의 대원
  - 어린이집의 장 등 보육교직원, 유아·초등·중등 교직원, 상담교사, 강사, 학원의 장과 직원
  -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90조 제3항 제3의4호).



## 2) 추진 체계

### (1)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시의 기본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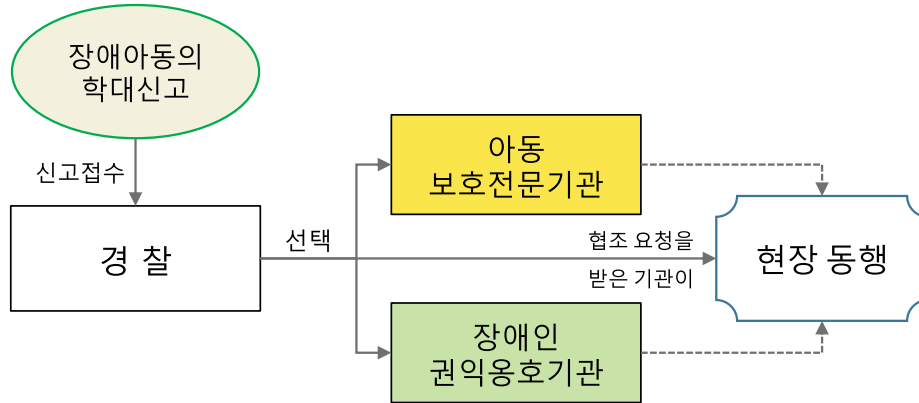


〈그림1〉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시의 기본 추진체계

-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더욱 면밀한 조사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사기관과 권익옹호기관이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마친 후 혹은 현장조사 시에, 다른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전에 서로 논의하여 혼란이 없도록 합니다.
- 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 외에도 학대행위자로부터의 분리, 쉼터 등의 입소, 의료기관 동행, 의사소통 보조 등을 지원/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대 등의 신고접수 시에 관련 지원이 필요할 경우 권익옹호기관에 요청하시면, 직접 지원을 나가거나 직접 지원이 어려울 시 관련 기관을 연계합니다. <IV-1-2>.수사의개시단계 참조

## (2) 신고접수 권한을 가진 곳이 두 곳 이상일 경우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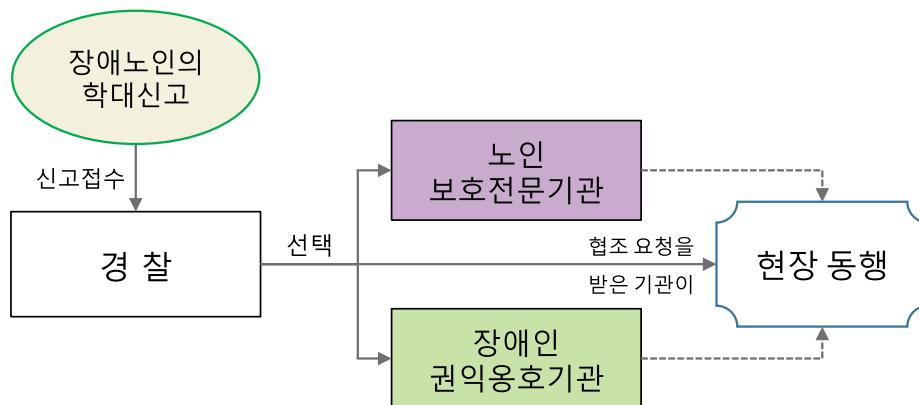
### ① 장애아동의 학대 신고일 경우



〈그림2〉 장애아동의 학대 신고 시 추진체계

- 학대사건의 피해자가 장애인이면서 아동인 경우에는 신고접수의 권한을 가진 전문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권익옹호기관 두 곳입니다.
- 장애아동의 학대신고가 112를 통해 경찰로 접수되었다면, 위 두 기관 중 어느 한 곳에 협조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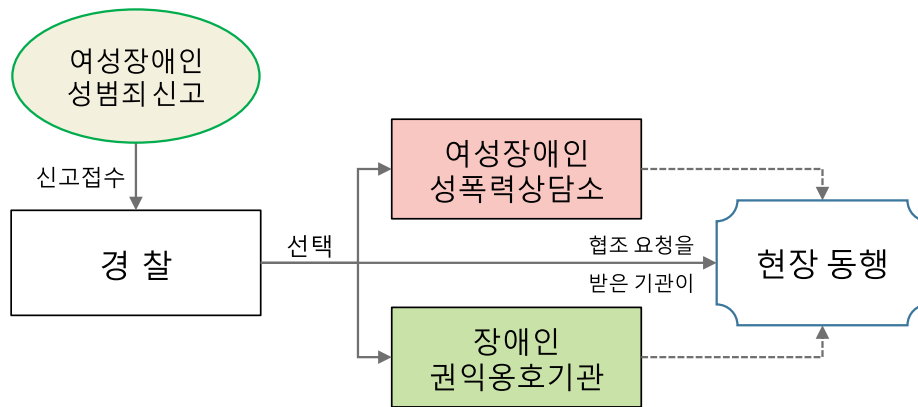
### ② 장애노인의 학대 신고일 경우



〈그림3〉 장애노인의 학대 신고 시 추진체계

- 학대사건의 피해자가 장애인이면서 노인인 경우에도 신고접수의 권한을 가진 전문기관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권익옹호기관 두 곳입니다.
- 장애노인의 학대신고가 112를 통해 경찰로 접수되었다면, 위 두 기관 중 어느 한 곳에 협조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③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일 경우



〈그림4〉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신고 시 추진체계

- 성범죄사건의 피해자가 여성장애인일 경우에도 신고접수의 권한을 가진 전문기관이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권익옹호기관 두 곳입니다.
- 여성장애인의 성범죄신고가 112를 통해 경찰로 접수되었다면, 위 두 기관 중 어느 한 곳에 협조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Ⅲ-2 신고접수 과정에서의 주의점

### 1) 신고접수 시 주의사항

- 신고자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신고자, 피해장애인, 학대행위자 관련 기본 정보 및 학대사실에 관한 정보는 필수 사항입니다.)
- 특히 신고자가 장애인일 경우, 과거이야기와 현재이야기가 혼동되어 있을 수 있기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피해사실에 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또한 복지카드를 예전에 발급받은 뒤 장애 재판정을 받지 않은 분들이 많아, 복지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유형과 실제 당사자의 장애유형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고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추후 진행과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 신고접수 시, 지나치게 캐묻거나 수사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면 장애인이 긴장·경직·무서움을 느끼게 되어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리거나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 위주로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 피해장애인이 직접 신고할 경우,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소리를 지르거나 격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수 시 함께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며, 피해장애인을 안정시킨 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신고자가 정확한 시간·사건흐름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신고자의 주장을 의심하거나 예단하지 않아야 하고, 반대로 장애에 대한 동정심으로 인해 지나친 공감 또는 맞장구치는 행위 또한 자제해야 합니다.



## 2) 신고접수 시 확인 할 사항

☞ 신고접수 시 아래 사항을 가능한 한 확인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b>신고자 관련 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자의 인적사항</li> <li>·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li> <li>·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li> </ul>
<b>피해장애인 관련 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장애인의 현재 상황</li> <li>· 피해장애인의 인적사항</li> <li>·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li> <li>· 피해장애인의 욕구</li> </ul>
<b>학대행위자 관련 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li> <li>·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및 동거 여부</li> <li>· 학대행위자의 특성과 성향 등</li> </ul>
<b>학대의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 발생 장소</li> <li>· 구체적인 학대의 내용</li> <li>· 피해의 정도</li> </ul>
<b>기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신고 여부</li> <li>· 타 기관 · 관련기관 개입 여부</li> <li>· 그 외에 특기사항(직접증거 및 정황증거의 여부 등)</li> </ul>



### 복지카드의 종류와 장애유형 표기

복지카드 일반형	복지카드 통합형	신용/직불/교통카드 통합형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복지카드 표기 (2019년 07월 이후)

변경 전_장애등급	변경 후_장애정도
1급, 2급, 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 5급, 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유형은 뒷면에 표기되어 있으니  
필히 뒷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장애인의 환경적 · 경험적 특성 고려

- 30대 이상인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를 이유로 학령기를 놓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 면담 시 해당 장애인의 학력·배움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말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에 나오는 범죄관련 용어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법적 용어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 부분에 유의하여 면담하여야 합니다.

#### [예시] 권익옹호기관의 관련 사례

---

지적장애인 성적학대(강간) 건이 신고 · 접수되어 피해자 지원을 하던 중, 수사절차에서 기소 시 성폭행(강간)이 아닌 성추행으로 기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확인해보니, 피해장애인이 용어를 잘 몰라 성폭행(강간)을 성추행으로 진술하여 잘못 기소가 되어서 다시 성폭행(강간)으로 기소변경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되어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어,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 등의 폭이 넓지 못하고 경험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또한 ‘정상인, 불구자, 장애자, 장애우’ 등의 표현 및 장애인을 병자 또는 어린아이 취급하는 표현 등의 사용은 피해야 하며, 그런 표현들로 인해 장애인이 조사원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의 진술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V-1. 장애이해 및 관련 용어의 바른 사용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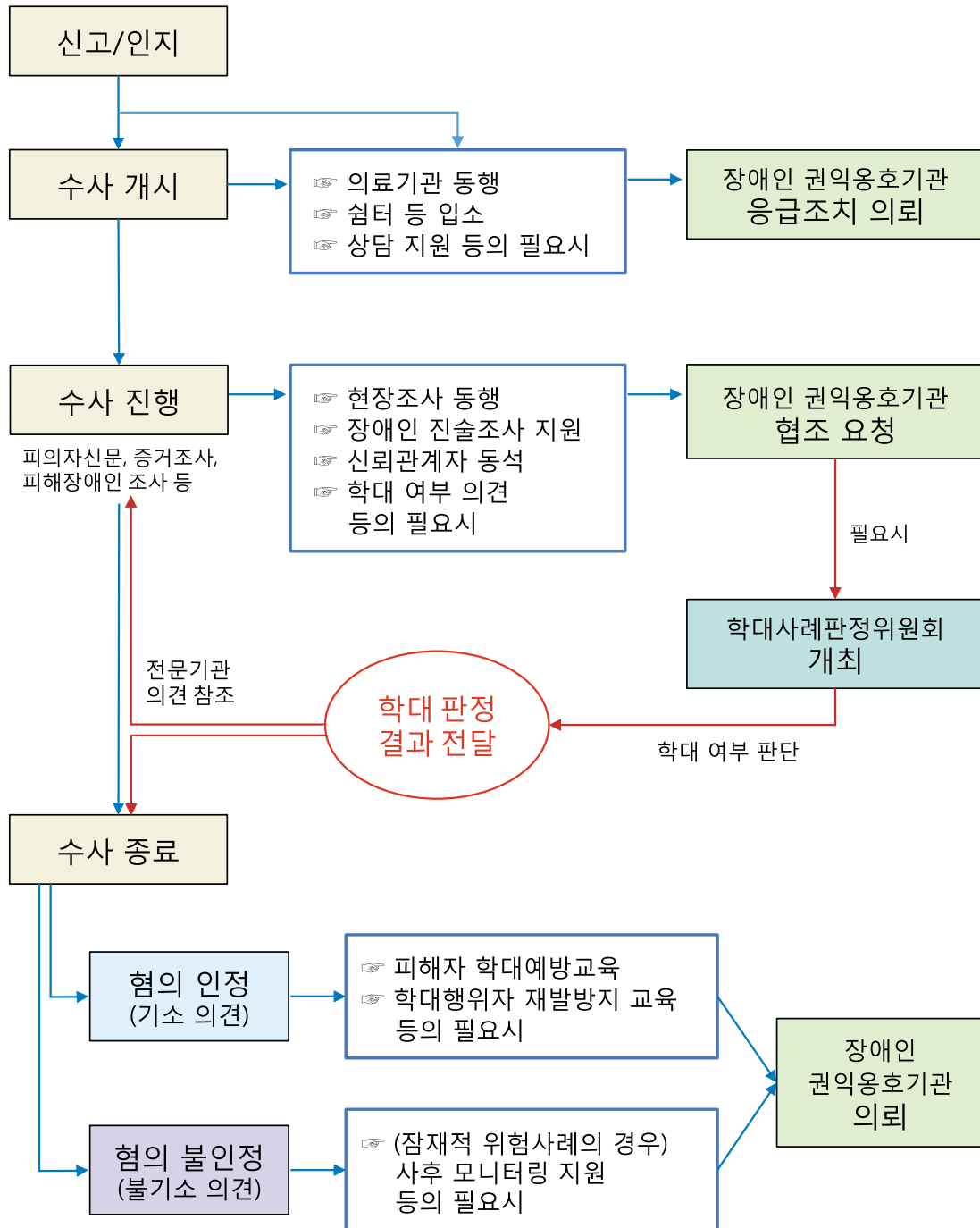
IV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실무협력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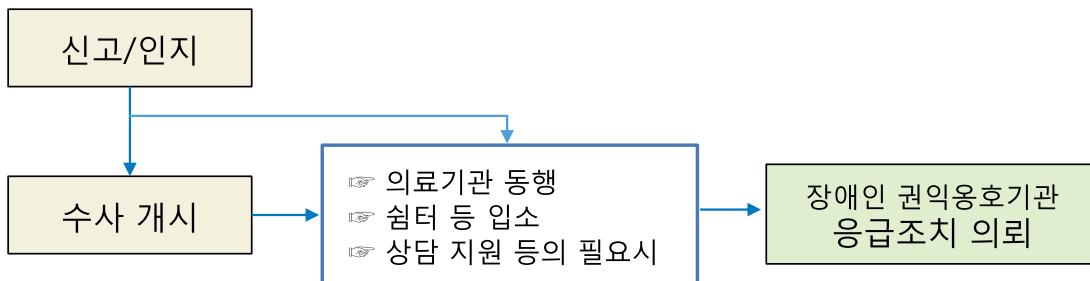
# IV-1 수사단계에서의 실무협력 체계

## 1) 체계도

○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본 실무협력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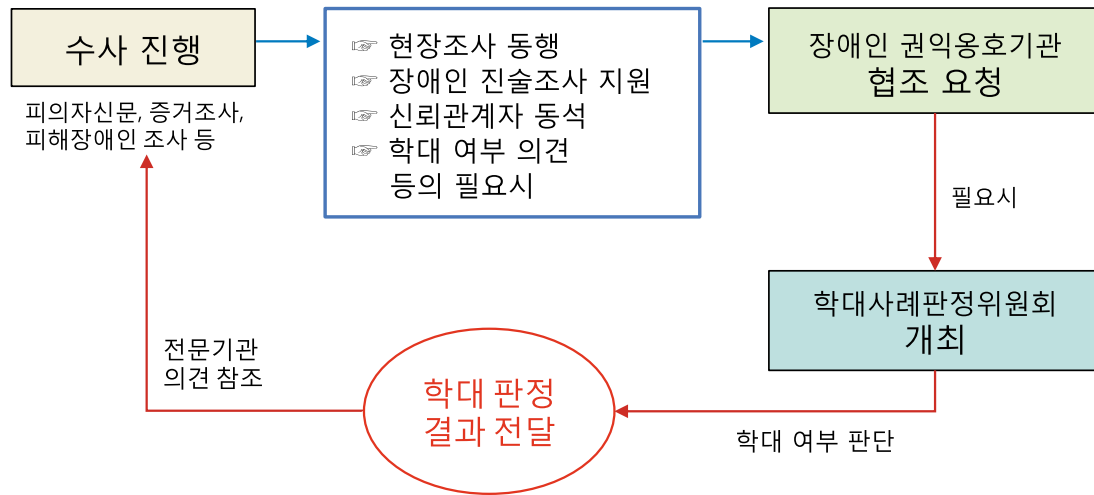


## 2) 수사의 개시 단계



- 112 또는 경찰서를 통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가 접수되거나 사법경찰관리의 사건인지를 통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 이때 학대 등의 피해장애인이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응급조치 권한이 있는 권익옹호기관에 의뢰하게 되면 직접 지원을 나가거나 직접 지원이 어려울 시 관련 기관을 연계합니다.
- 피해장애인이거나 신고자 등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여서 수사를 진행하기 전에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권익옹호기관에 의뢰하게 되면 전문상담원이 상담을 지원합니다.
- 권익옹호기관에서는 피해장애인의 장애 특성,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나 보조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3) 수사의 진행 단계



#### (1) 장애인학대 현장조사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직원을 현장에 동행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항 [법률 제16248호]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리고 동법 제59조의11 제3항에 의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의 현장조사와 상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이나 관련인 조사, 피해 입증자료의 열람 및 확보를 할 수 있는 현장조사 권한이 있어 사법경찰관리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학대 등의 현장에 출동할 경우 함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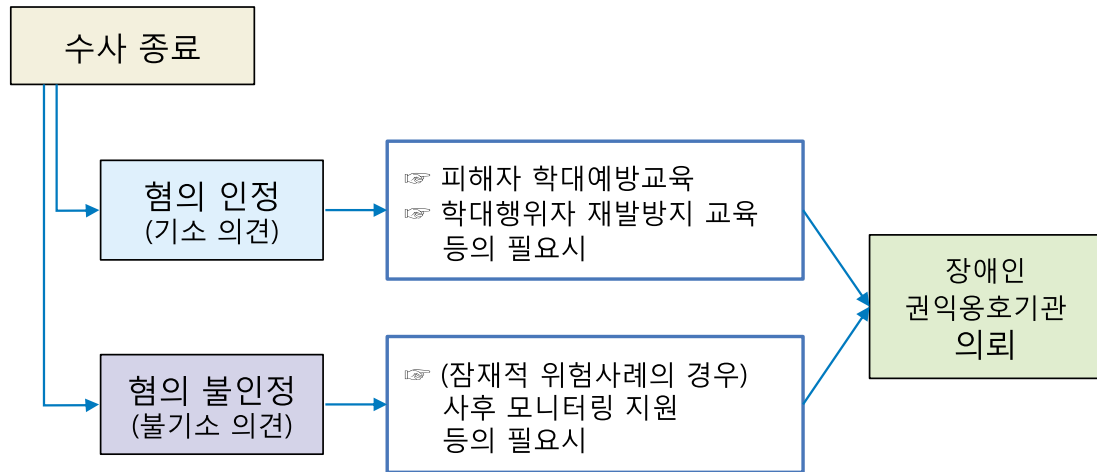
## (2) 진술보조인 및 신뢰관계인의 동석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의하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수사를 할 때에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에 의하면, 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피해장애인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거나 진술보조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진술보조인의 참여 혹은 신뢰관계인으로서의 동석이 필요한 경우, 권익옹호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3) 장애인학대 등의 판단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에 의하여, 지역권익옹호기관 내 학대사례판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교수,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대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에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학대에 관한 전문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권익옹호기관에 학대 판단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수사의 종결 단계



##### (1)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될 때

-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와 제59조의12에 의하여, 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이에 피해장애인을 위한 학대 예방교육이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권익옹호기관에 해당 교육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 제5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권익옹호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 사후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행할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 (2) 수사결과: 혐의가 불인정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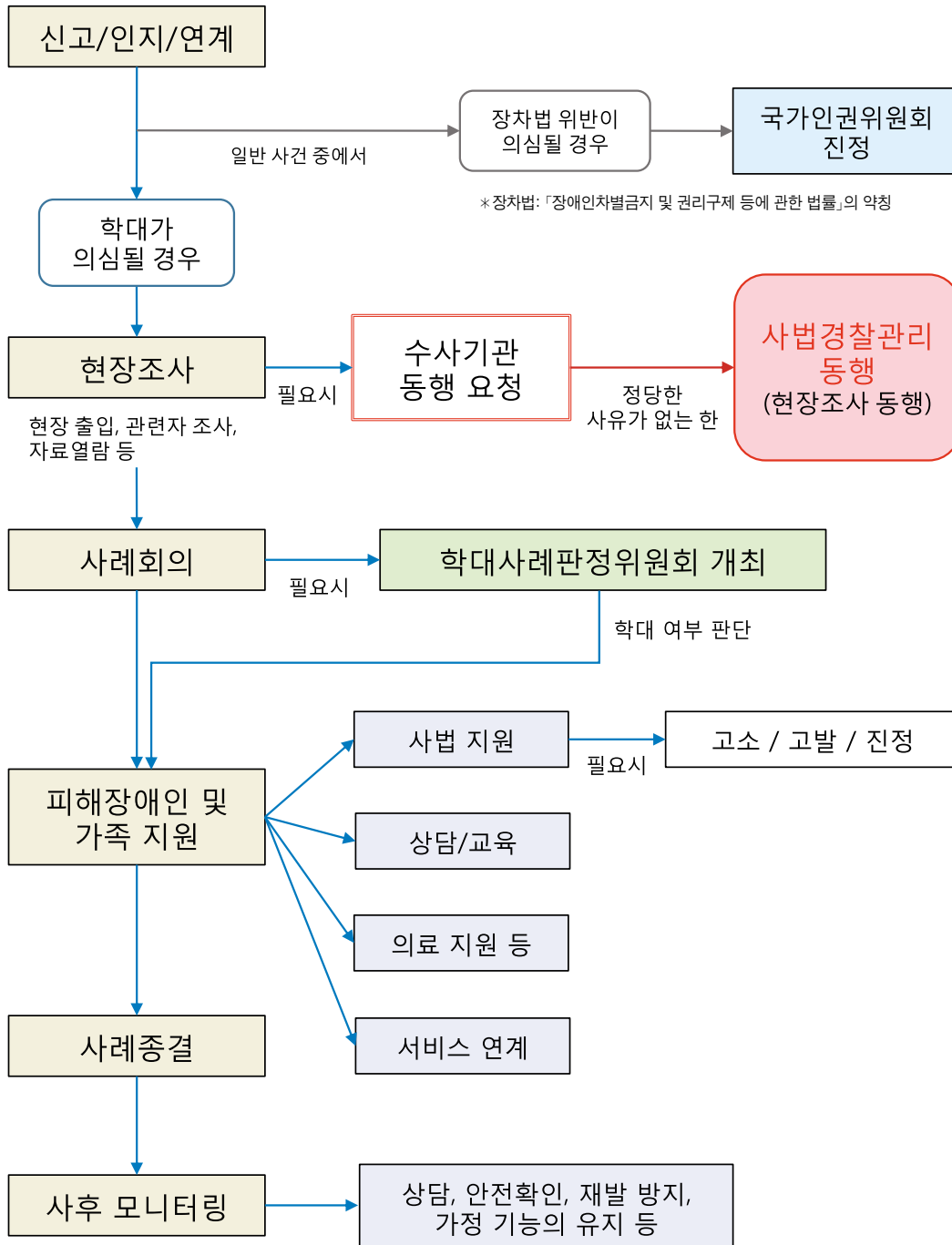
- 혐의는 불인정 되었으나 해당 장애인이 향후 비슷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권익옹호기관에 잠재적 위험사례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권익옹호기관에 잠재적 위험사례로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안전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역의 사례관리팀과 연계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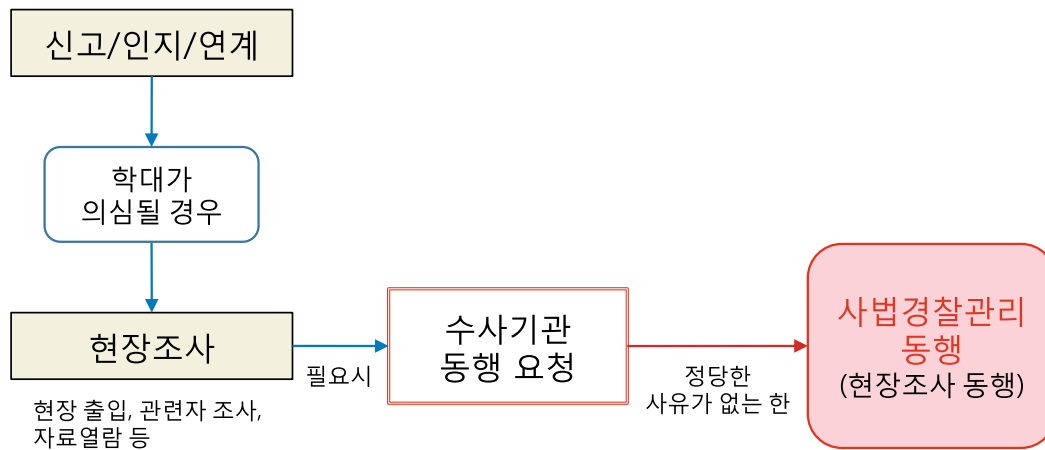
## IV-2 기관 조사 과정에서의 실무협력 체계

### 1) 체계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심으로 본 실무협력 체계도



## 2) 현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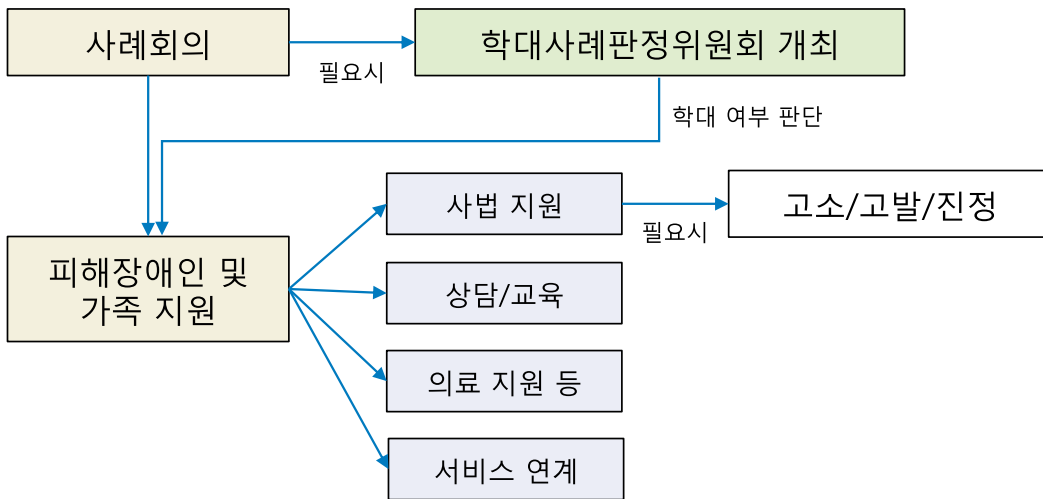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항에 의하면, 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행한 사법경찰관리는 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현장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관련자를 조사하거나 현장의 환경을 둘러보거나 학대의 흔적, 학대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권익옹호기관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응급조치를 하는데 있어 어떠한 방해를 받게 된다면,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90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

- **장애인복지법 제86조(벌칙) 제3항 제2호**: 현장조사의 업무를 수행 중인 권익옹호기관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동법 제90조(과태료) 제3항 제3의5호**: 권익옹호기관 직원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3) 조사결과: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로 판단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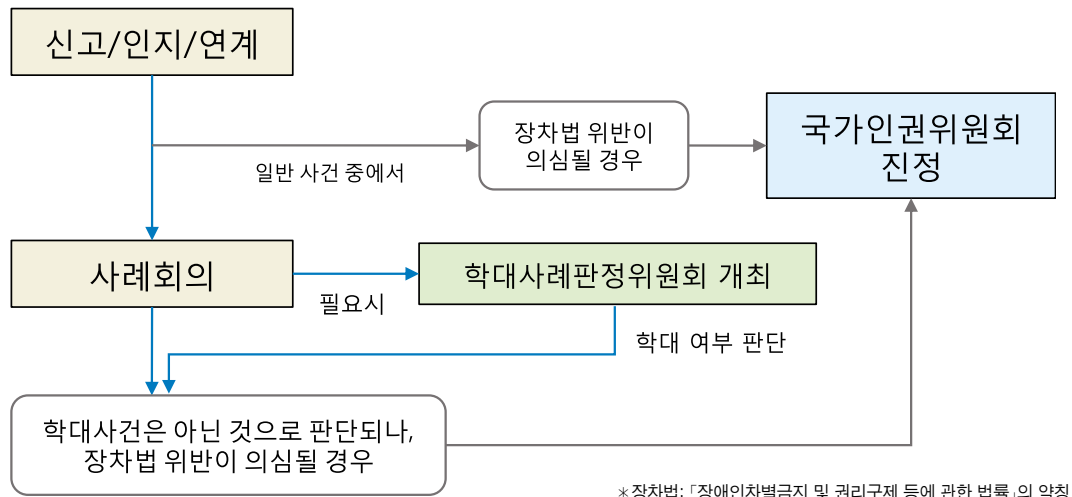
- 권익옹호기관에서는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때, 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학대사건으로 판단되지 않을 때에나 종합적인 사례지원 방안 등이 필요할 때에는 기관 내 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판단합니다.
- 장애인 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판단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행정기관에 진정, 피해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의 경우, 형법 등에 근거하여 처벌되는 학대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상의 관리 소홀 및 인권 침해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위반이 확인되어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사건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2차 학대 또는 안전, 만족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4) 조사결과: 학대가 아닌 차별일 때



\*장차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

- 권익옹호기관에 신고된 사건 중에는 학대의심 사례가 아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사례도 접수되곤 합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 후 사례회의 또는 학대사례판정위원회 회의를 한 결과, 학대 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차별로 의심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하고, 해당 전문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위해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접수된 사건 중 학대사건은 아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사건으로 의심될 경우, 권익옹호기관에 의뢰하시면 차별여부의 1차적 검토, 진정서 작성 및 국가인권위원회 접수 등의 업무를 연계·지원합니다.

#### ※ 참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제삼자 가능)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사안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여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학대 등의 피해장애인 면담 가이드

## V-1 장애이해 및 관련 용어의 바른 사용<sup>2)</sup>

### 1) 장애 이해

#### (1) 법에서 정의하는 '장애' 와 '장애인'

- '장애인' 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 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인' 이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 (2) 장애는 상대적이고 사회적인 개념

- 시력이 안 좋지만 안경을 사용해서 불편함이 없는 경우 시각장애라고 하지 않듯이 기술과 노력으로 제약이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 '장애' 라고 하지 않습니다.
- 장애는 개인의 물리적·정신적 손상과 사회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장애를 어떤 범주로 규정하기보다 '현재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임산부, 고도비만, 외국인 이주자 등을 한시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도 합니다.
- 사회문화와 제도 등을 개선하여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거나 덜 겪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견의 환경



물리적 환경

2) 해당내용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차별 예방을 위한 안내서: 함께 만드는 인권(송정문·방수연·장정은·김웅현·김순옥, 2018,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외 5개 단체 공동발행)』을 바탕으로 재구성.

### (3) '장애인' 의 대비용어는 '비장애인'

-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나 문서상 혹은 공식 발언 시에 장애인에 대비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통칭할 경우, 아직도 '정상인, 일반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상' 의 반대말은 '비정상' 이고, '일반인' 의 대비용어는 '이상자, 특수인' 입니다. 따라서 '정상인, 일반인' 은 장애인을 비정상이거나 이상자로 취급하는 용어이므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비장애인' 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보편적 용어 사용입니다.

## 2)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유형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 절단장애 · 관절장애 · 지체기능장애 · 변형 등 장애
		뇌병변장애	·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 시력장애 ·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 청력장애 ·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 언어장애 · 음성장애 · 구어장애
		안면장애	· 얼굴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신장기능 이상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 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 지적능력의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 소아기 자폐증 · 비전형적 자폐증
	정신장애	정신장애	· 조현병 ·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 반복성우울장애

- 장애인복지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유형은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 유형입니다.
- 해당 장애인을 면담 할 때에 세부유형과 <V.2~3>의 면담가이드를 참고하여 불쾌함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관련 용어의 바른 사용

#### (1) 장애인? 장애우? 장애인!

- ‘장애인’ 이 맞는 표현입니다.
- 장애인과 관련한 표현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권 의식에 따라 변화합니다. 오래 전에는 장애자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지만 장애자의 ‘자’는 한자로 者(놈자)를 사용하고 있어 비하의 표현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었습니다.
- 이에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2) ‘장애우’ 는 좋은 의미인데, 왜 사용하면 안 되나요?

- ‘장애우(友:벗우)라는 용어는 환우(患友:같은 병을 가진 동료), 교우(校友:같은 학교 동료), 전우(戰友:함께 싸운 동료)처럼, 같은 경험을 가진 장애인을 동료로서 좀 더 친근하게 지칭하고자 장애인 단체 등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하지만 이 용어가 방송이나 여러 매체에서 자주 언급되면서,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장애인을 통칭하는 의미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을 무조건 친구나 동료로 지칭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장애우’ 라는 표현 대신 **‘장애인’**이라는 **공식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3) '장애인' 을 비하하는 잘못된 용어들

- 아래 표의 비하용어는 오래 전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놀리거나 하대할 때 사용해왔던 용어들로 분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장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하용어(사용금지 용어)	권장 용어(대화할 때)	공식용어(문서작성시)
반신불수, 절뚝발이, 절름발이, 앉은뱅이, 외다리, 외발이, 외팔이, 꼬추, 곱사등이, 난쟁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체장애인
귀머거리, 병어리, 농아자, 농아인	청각·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농인)	청각·언어장애인
말더듬이, 언청이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
맹인, 장님, 소경, 애꾸, 봉사, 맹자, 애꾸, 애꾸눈, 외눈박이, 사팔뜨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시각장애인
정신지체, 정신박약	발달·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발달·지적장애인
미치광이, 정신병자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신장애인
간질, 간질병자	뇌전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뇌전증장애인

### (4) '장애' 를 비하하는 잘못된 표현들

- 아래 표의 비하표현은 장애 혹은 특정한 장애유형을 빗대어 동정이나 부정적인 의미로 관용구처럼 사용해 왔던 표현들입니다. 그러므로 권장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하 표현(사용금지 표현)	권장 표현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는 질환이 아님)
불구가 되다	장애를 가지게 되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여	휠체어를 사용하여, 또는 휠체어를 이용하여
장애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꿀 먹은 병어리	말문이 막힌, 말을 못하는
병어리장갑	손모아장갑, 엄지손장갑
귀머거리 삼년, 병어리 삼년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병어리 냉가슴 앓다	말도 못하고 혼자서 가슴만 답답하다
눈먼 돈	관리 안 되는 돈
외눈박이 방송	편파방송
눈깔이 멀었냐?	제대로 판단해라, 똑바로 봐라
눈 뜬 장님	확인하고도 판단을 못하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전체를 모르는 어리석은 판단
절름발이 인재	결격사유가 많은 인재, 또는 부족한 점이 있는 인재

## V-2 신체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 면담 가이드<sup>3)</sup>

### 1)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

#### (1) 지체장애인 ·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 지체 · 뇌병변장애인이 휠체어 · 목발을 이용 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1층이나 접근이 가능한 곳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하고 조용한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 지체 · 뇌병변장애인이 휠체어 이용 시, 이야기하기 편안한 위치를 잡은 뒤 앉아서 눈높이를 맞춰 조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참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6항에 의하면,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만약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0. 5. 11, 2012. 10. 22.>

3) 해당내용은 『경찰공무원을 위한 장애와 장애인의 이해: 장애인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2014,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경찰교육원 공동발행)』을 참조하여 집필.

- 뇌병변장애인들 중에는 언어장애가 수반되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의사소통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조력의 내용을 조사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해서도 설명하여야 하며, 원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합니다.
- 지체·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사회와 단절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고 체구가 작은 경우도 있기에 지체·뇌병변장애인의 나이에 맞게 경어를 사용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조사하며 지체·뇌병변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예민하고 위축되어 조사 시 긴장감 등으로 근육이 더욱 경직될 수 있고, 언어장애가 순간적으로 심해질 수 있기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진술을 정확히 듣지 못했을 경우 2-3회 되물어 정확히 확인하고, 알아듣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정중히 물은 뒤 신뢰관계인 또는 의사소통조력인을 통해 진술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 ※ 질문 예시

“제가 000씨(피조사자)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옆에 계신 신뢰관계인(또는 의사소통조력인)에게 해당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근육의 경직, 변형, 부정확한 언어사용이 있다고 하여 지능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 출입 시 출입문을 열어주거나 문을 잡아줍니다.
- 목발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미끄럽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시각장애인의 경우

- 시각장애인은 많은 음성들이 중복되고 시끄러울 경우 상황을 이해하는 데 다소 혼란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시 주변이 시끄럽거나 번잡한 장소 등은 피해야 합니다.
- 조사 전 신분을 먼저 밝혀야 하며, 주변이나 관련 상황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여도 말소리의 방향을 모두 인지하기에 본인과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인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도록 합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하는 경우, 심리적 안정도모를 위해 신뢰관계인을 동석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해당 장소에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서류, 물건의 위치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위치를 임의적으로 옮길 경우 시각장애인이 움직일 때 부딪히거나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 비언어적 표현은 지양하고, 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며, 주변 사물 등에 대해 구체적인 묘사를 해주어야 합니다.
- 조사 중 자리를 비울 경우, 상황을 설명해 준 뒤 자리를 비워야 하고, 돌아왔을 경우 돌아왔다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 시각장애인의 시력상태를 파악하여 확대경(돋보기),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문서를 직접 읽어주어야 합니다.
- 그 외 보조인을 통한 대독, 조사자의 낭독,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화면낭독프로그램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 좋습니다.



-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물은 뒤, 도움을 요청할 경우 팔을 시각장애인에게 내주어 잡게 합니다.
- 보조기구, 보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주인의 허락 없이 만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제3자와 대화 시에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 길이나 건물 등 주변 환경 및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 조사 시 작성해야 할 문서가 있을 경우 문서를 음성으로 설명하고, 작성 후에는 확인을 위해 문서를 천천히 읽어주어야 합니다.
- 자리를 권할 때 의자 등받이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면 좋습니다.

### (3) 청각장애인의 경우

- 무리하게 대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현장 상황 중심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진술조사 전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수어를 사용하는 경우 조사 시 수어통역센터의 수어통역사를 의사소통 조력인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수어통역사 등과 같은 의사소통 조력인을 통해 대화하는 경우에도 질문은 청각장애인을 보며 해야 합니다.
- 청각장애인, 조사관, 수어통역사의 자리배치는 삼각형 구도를 이뤄야 하며, 수어통역사는 장애인을 마주보게 합니다.
- 구화(입모양)가 가능한 경우, 대화 시작 전 시선을 끌어 집중을 유도하며, 대화 시 눈을 보며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미 있는 표정이나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 조사의 내용이 정확한지 수어통역사 등 보조인과 함께 조서를 확인해야 하며, 중요내용의 경우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어통역사와 장애인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 조사관의 자리를 삼각형 구도로 배치합니다.



- 실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으로는 수어 외에 구화(입모양), 몸짓, 필담(메모나 컴퓨터 자판 이용) 등이 유용합니다.
- 수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도 있으므로 청각장애인이 왔다고 해서 모두 수어통역사를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필요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언어장애인의 경우

- 의사소통과 표현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사소통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내용을 조사 전에 알려야 합니다.
- 대화의 속도를 줄이고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며, 짧고 간단한 문장을 구사해야 합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하는 경우, 심리적 안정도모를 위해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조사 시 얼굴, 눈을 바라보며 경청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끝마칠 때 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 조사 시 잘 알아듣지 못했다면 다시 물어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알아듣기 힘든 경우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보조인을 통해 진술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 대화의 속도를 천천히 해야 하며, 청각장애가 동반 될 경우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2) 내부 기관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

### (1) 호흡기 · 신장 · 심장 · 뇌전증 · 간 · 장루 · 요루장애인의 경우

- 준비가 오래 걸리고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혼잡한 시간을 피하여 여유 있게 조사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 비장애인보다 조사기간을 길게 잡아 회당 조사 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자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건강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 내부 신체장애의 유형을 사전에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형태를 정해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 · 제공해야 합니다.
-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강압수사는 피해야 합니다.
- 미리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시간을 맞춰 투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뇌전증의 경우 조사 중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응방법에 대해 확인한 뒤 발작 시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며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 장루 · 요루장애인의 경우 대변 또는 소변을 위한 주머니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코를 찡그리거나 코를 막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 호흡기 장애의 경우, 냄새(향수, 담배 등)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 음료를 권할 때 특정 음료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섭취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권해야 합니다.

### 1) 발달장애를 가진 피해자

#### (1) 지적장애인의 경우

- 먼저 인사를 건네며 호의적인 태도를 전달하고, 면담 전 신뢰관계를 충분히 형성한 뒤 면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사탕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 면담 시작 시 본인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 구체적 실물이나 사진 등을 이용해 간결하게 이야기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외모를 보고 어려워하거나, 지능이 낮다고 판단하여 반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의사소통과 표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내용을 조사 전에 알려줘야 합니다.
- 지적장애인의 경우, 조사 시 반드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하며, 부모나 교사, 담당 사회복지사, 권익옹호기관 직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들 중 당사자가 조사 시 신뢰관계인으로 함께 동석하고 싶은 사람을 직접 선택하도록 합니다.

#### ※ 참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법경찰관리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소통조력인이나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킬 수 있음에 대하여 해당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명하지 않게 될 경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장애인이 조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를 기울여 쉽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되물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해당내용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매뉴얼 연구: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 수사지원을 중심으로(김진우·이선경·홍연표·고명균·송남영, 2014,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경찰청 공동발행)』와 『경찰공무원을 위한 장애와 장애인의 이해: 장애인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2014,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경찰교육원 공동발행)』을 참조하여 집필.



- 면담 시 최대한 단어·내용의 의미 등을 풀어서 설명해야 하되, 짧은 문장을 사용합니다. 또한 수사관련 단어·한자어·영어단어·줄임말 등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사용할 경우 무슨 의미인지 풀어서 쉽게 설명하거나 그림도구 등을 사용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 대답을 듣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며 기다려주고, 조사 시 질문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하거나 비현실적인 진술을 할 경우 휴식 등 조사 중단 후 재개하여야 합니다.
- 지적장애인은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면 대화에 집중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질 수 있으므로, 회당 조사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면담 시 동일한 대답(예 또는 아니오)이 반복될 경우 이해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질문의 형식을 바꿔 질문하고 단답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 필요시 시각적 자료인 사진이나 그림 등의 보조물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 지적장애인은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숫자·양·색깔·부피·정도 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진술 시 부정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특성에 의한 것이기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의 구체성, 주변 정황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조사가 종료된 뒤 조서 내용에 대해 확인 받을 경우 신뢰관계인과 조서를 함께 확인시켜주며, 신뢰관계인이 지적장애인에게 조사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합니다.



- 대화를 나눌 때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 말을 끝까지 들어주어야 하며, 이해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인지능력이 낮아하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알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지적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나이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고,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 (2) 자폐성장장애인의 경우

- 언어장애가 수반되어 의사소통과 표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내용을 조사 전에 알려야 합니다.

### ※ 참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법경찰관리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소통조력인이나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킬 수 있음에 대하여 해당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명하지 않게 될 경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장애인이 조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를 기울여 쉽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되물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낯선 사람이나 장소, 익숙하지 않은 절차,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등에 심하게 불안해 할 수 있으며, 착석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려 한다든지 계속 소리를 내는 등의 여러 가지 행동특성을 보일 수 있기에 사전에 충분한 내용 설명과 숙지, 예행연습이 필요합니다.
- 낯선 환경과 사람, 변화에 대한 불안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극(소리, 사람들의 움직임, 조명 등)에 흥분할 수 있으므로 분리된 공간(진술녹화실 등)을 활용하여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자폐성장장애인의 경우, 조사 시 반드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하며, 부모나 교사, 담당 사회복지사, 권익옹호기관 직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들 중 당사자가 조사 시 신뢰관계인으로 함께 동석하고 싶은 사람을 직접 선택하도록 합니다.
- 자해행동을 보이는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강압하지 않아야 하며 동성 조사원이 손을 꼭 잡아 준 뒤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동행동(반복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강제적으로 제지하기 보다는 잠시 기다려준 뒤 안정되면 행동의 이유를 물어봅니다.
- 면담 시 동일한 대답(예 또는 아니오)이 반복될 경우 이해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질문의 형식을 바꿔 질문하고 단답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폐성장장애인의 경우 대답 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끝단어만 쫓아하는 반향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A입니까. B입니까.’, ‘B입니까. A입니까.’ 처럼 말 순서를 바꾸어 2회 이상 확인해야 하며, 그 말이 현재 어떤 상황에서 쓰이고 있는지 추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언어적으로 표현이 잘 되지 않는 경우, 행동을 유심히 살펴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찾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 조사가 종료된 뒤 조서 내용에 대해 확인 받을 경우 신뢰관계인과 조서를 함께 확인시켜주며, 신뢰관계인이 자폐성장장애인에게 조사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를 어린이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위험한 순간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뜨거운 물이나 전기 등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2)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가진 피해자

### (1) 정신장애인의 경우

- 정신장애인의 경우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의사소통과 표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내용을 조사 전에 알려줘야 합니다.
- 면담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친밀감을 형성하여 정신장애인이 안정감을 가지고 면담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조사 시 정신장애인이 원할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하며, 부모나 교사, 담당 사회복지사, 권익옹호기관 직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들 중 당사자가 조사 시 신뢰관계인으로 함께 동석하고 싶은 사람을 직접 선택하도록 합니다.
- 편안한 상태에서 면담을 진행해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 다그치거나 압박면담을 할 경우, 정신장애인이 이상행동 등을 보일 수 있으며 만약을 위하여 주변에 위험한 물건(가위, 칼, 날카로운 물건 등)은 치우도록 합니다.
- 정신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 등을 통하여 현재 상태,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각 지자체마다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당사자를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의뢰하여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상대방의 표정이나 태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에, 딱딱한 표정이나 눈맞춤을 하지 않는 응대 등은 지양해야 합니다.
- 수개념 · 시간개념 · 추상적용어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면담 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의사소통 불가로 단정 짓지 않아야 합니다.
- 약물치료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행동이 소거 또는 최소화 되므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지 않도록 합니다.

VI

부록

● **설립 배경**

장기간의 노동력 착취, 폭행, 가혹행위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학대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2015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2017년도를 기점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 전국에 설치되었습니다.

● **주요 업무**(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 회복 지원
- 피해장애인 ·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장애인학대 예방 연구 · 교육 및 홍보
- 관계기관 · 법인 · 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업무협력

●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1항에 의하면,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권익옹호기관을 설치 ·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권한**

신고접수 권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동행 요청 권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항에 의하면, 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권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3항에 의하면, 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권익옹호기관에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59조의7 제6항에는 누구든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열람 권한	<p>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3항에 의하면, 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권익옹호기관에 자료열람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p> <p>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응급조치 권한	<p>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항에 의하면, 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권익옹호기관에 응급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p>
보조인으로 선임될 권한	<p>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제1항에 의하면, 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학대사건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인에는 진술보조인, 신뢰관계인 등이 포함됨)</p>

##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역권익옹호기관에서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위원회로서,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여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주요 기능

- 학대 사례인지 불명확한 사례에 대하여 장애인 학대 여부를 판정
- 학대 피해자 지원방안이나 학대행위자 후속조치 등에 대한 의견제시
- 다방면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종합적 지원 방안 제시
- 의료·법률·복지서비스 등 전문분야에 대한 조언

## ● 오시는 길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5 리제스타원 210호 / 전화 055-603-8295

승용차: 네비게이션에 “리제스타워 입구” (창원시 성산구)로 검색하면 지하주차장 입구를 바로 안내

버스: 102, 107, 109, 115, 17, 213, 503, 507, 751(중앙동정류장) 하차, 도보 2분



● 설립 목적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는 부산·울산·경남 지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2005년 10월 개소하였습니다.

●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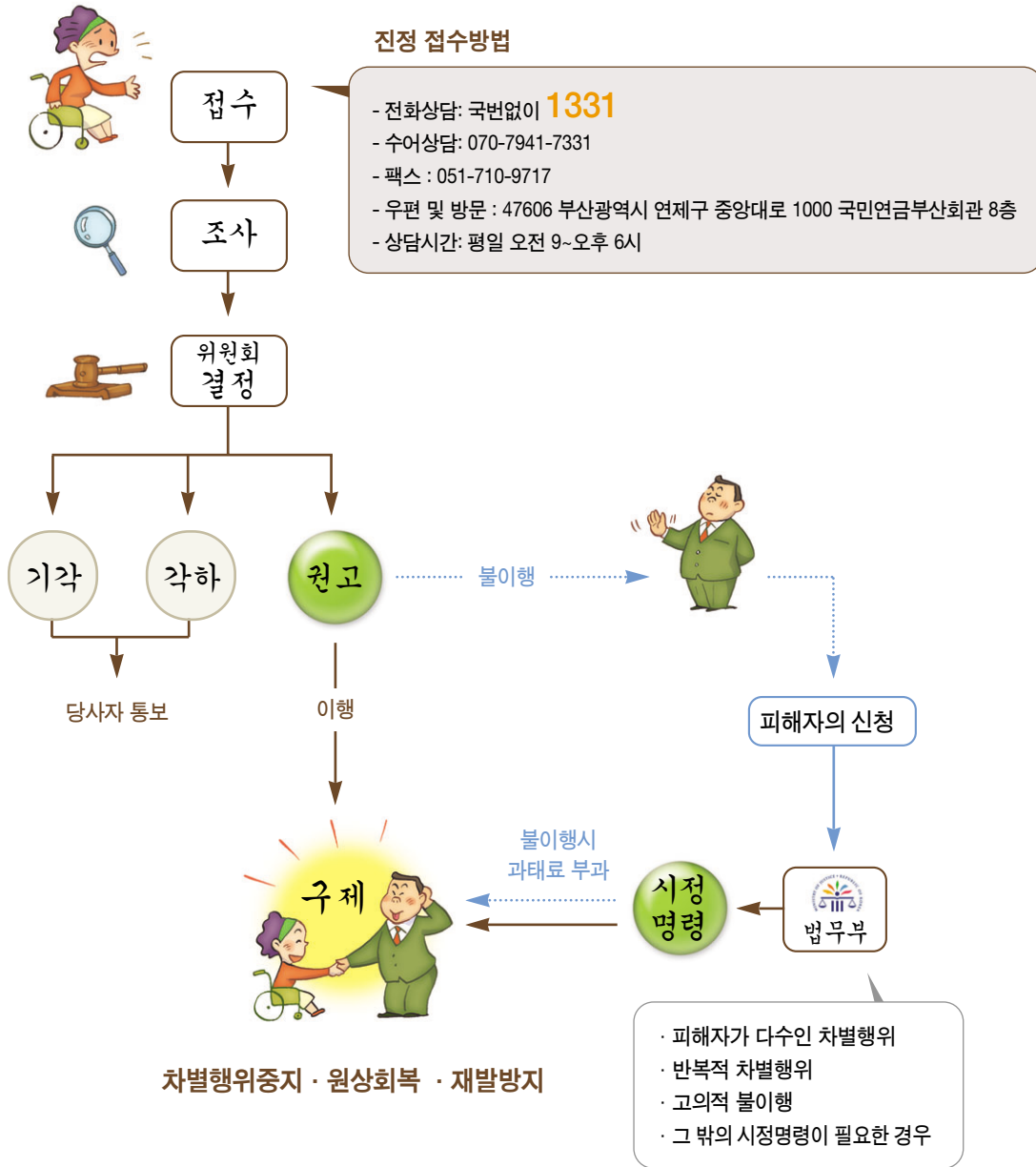
정책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의견표명</li> <li>·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의견표명</li> </ul>
조사·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지자체, 학교 포함),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성희롱) 조사·구제</li> <li>·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차별행위(성희롱) 조사·구제</li> </ul>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li> <li>· 인권 문화 확산 및 홍보</li> </ul>
국내외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옹호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li> <li>·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li> </ul>

● 조사·구제

인권침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 당한 경우
차별행위	<p>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음의 사유로 차별 행위를 다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사유: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li> </ul>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장애인차별 진정 접수 및 권리구제 절차(부산인권사무소)



● 오시는 길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부산회관 8층

지하철: 시청역 2번 출구, 도보 5분

버스: 110-1, 179, 29, 86, 87, 99, 1010, 131, 141 <시청역 · 부산지방경찰청 정류장> 하차, 도보 5분



### ● 경남지방경찰청의 인권보호 활동

- 경남지방경찰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따뜻한 인권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해 쏠 경찰관이 노력하며 인권보호 활동<sup>3)</sup>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경남청 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장애인 대상 학대·성폭력’ 수사 역량 제고

-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은 지방청(여성청소년수사계)에서 전담 수사
- 가정 내 장애인학대 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 및 수사, 학대예방 경찰관(APO)의 사후관리·지원
- 진술분석전문가·진술조력인·속기사 등 전문인력 활용, 형사절차상 장애인 피해자 권익 보호
- 경찰관서 피해자보호관을 통해 조사 이후에도 쉼터·상담소 연계, 지자체를 통한 경제적 지원 등 사후 보호·지원

### ● 장애인시설 및 재가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예방 활동

- 지자체(사회복지과)·성폭력상담소 등과 합동방문단 구성,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 활동 전개
- 재가(在家)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피해사례 발굴 등 보호활동
-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내 여성·장애인 분과 등 참여, 재가지적장애여성 보호 강화

3) <주요활동> △언론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홍보) △북한이탈주민(보안), 체류외국인(외사) 인권보호 △가명주소, 변호인참여권, 방어권 보장(여청·수사·형사 등) △검시 前 묵념 정례화, 유품봉투·상자 사용 등(과학수사) △대화경찰관제 운영(정보)

## ● 발달장애인 조사 전담경찰관 운영

- 2015. 11. 2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수사기능에서 · 발달장애인 조사 전담경찰관 · 을 지정하여 운영
- 발달장애인 사건 접수 시, 원칙적으로 해당 관서에 지정된 · 발달장애인 조사 전담경찰관 · 에게 배당하여 전담수사 체계 확립

## ● 수사관 대상 장애인 조사기법(NICHD)<sup>4)</sup> 교육

- 성폭력 피해 장애인 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 수사관 대상 수준별(초·중·고·동료전문가) 아동·장애인 조사기법 교육

구분	주요 교육 과정	
초급	· NICHD기법, 기본 이론 교육 · 아동·장애인의 심리 이해 · 모의 사례를 통한 질문 연습	· 해바라기센터의 이해 · 피해자의 권리 이해 · 성인지 감수성 교육
중급	· 조사면담 계획과 질문방법 훈련 · NICHD에 대한 종합적 토론 · 조사 대상자와 친밀감 형성 훈련	· 모의사례 실습 · 성인지 감수성 교육 · 진술분석의 이해
고급	· 진술 거부 아동·장애인 면담 기법 · 진술 신빙성 의심 사례 판단 기법 · 성폭력 피해 진술의 법적 쟁점	· 성인지 감수성 교육 · 모의사례 실습
동료전문가 양성	· 동료 수사관의 조사 질문을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교수법 · 서면 수퍼비전(8회), 대면 수퍼비전(3회) · 동료피드백 시 유의사항	

4) 美 ‘국립 아동건강 및 발달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에서 개발, 아동·장애인 인지·발달 능력을 고려하여 진술을 이끌어내는 구조화된 면담기법(경찰청 '09년 도입)

## VI-4 주요 기관 연락처

### ● 장애인 대상 사건 발생시 기관의 역할

구분	신고접수 및 조사	상담 및 지원
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에 한함) ·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장애인에 한함)
장애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 노인보호전문기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에 한함) ·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장애인에 한함)
장애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 아동보호전문기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해바라기센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에 한함) ·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장애인에 한함)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에 한함) ·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장애인에 한함)
장애인 차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	· 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 장애관련 교육기관

장애관련 교육 내용	기관명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장애인권교육	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행위자 교육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 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 국가인권위원회 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함)

## ● 주요 기관 연락처

기관명 / 주요업무	전화번호	주소
<b>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b> 장애인학대 조사 등	(055)603-8295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5, 리제스타워 210호
<b>경상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b> 노인학대 조사 등	(055)222-1389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15
<b>경상남도 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b> 노인학대 조사 등	(055)754-1389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98
<b>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b> 아동학대 조사 등	(055)244-1391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
<b>경상남도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b> 아동학대 조사 등	(055)757-1391	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
<b>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b> 아동학대 조사 등	(055)322-1391	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길 8
<b>경남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b>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등	(055)242-5090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0길56
<b>경상남도 해바라기센터</b>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등	(055)244-8117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b>경상남도 서부해바라기센터</b>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등	(055)754-1375	진주시 강남로79 경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층
<b>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b> 발달장애인지원, 공공후견	(055)716-2390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 프라자 609호
<b>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b> 장애인 차별대응, 교육	(055)286-1330	창원시성산구 중앙대로77 동성올림픽타운808호
<b>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b> 정신질환 관리, 지원	(055)239-1400	창원시 의창구 동읍로 457번길 48
<b>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b> 인권침해 및 차별 조사 등	(051)710-9716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부산회관 8층

인권증진을 위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실무협력 매뉴얼

발행일: 2019. 10.

발행처: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 경남지방경찰청

집필인: 송정문, 이상충, 정유리

전 화: 055-603-8295(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1-710-9713(부산인권사무소), 055-233-2617(경남지방경찰청 인권담당)

홈페이지: [www.gnaapd.or.kr](http://www.gnaapd.or.kr)(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부산인권사무소), [www.gnpolice.go.kr](http://www.gnpolice.go.kr)(경남지방경찰청)

제 작: 젊은기획 02-2264-2015

\*이 저작물은 저작권권을 공동발행처가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 ·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권증진을 위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실무협력 매뉴얼

